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3. 29.(목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6 의결사항

가. 「2012～2013년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(안)」에 관한 건 - (2012-16-065)

o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12~2013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계획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내용

< 2012～2013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 >

- 시내전화, 공중전화, 도서통신과 선박무선전화서비스는 전국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KT를 지정
- 특수번호전화서비스는 유·무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KT, SKT 등 39개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지정
- 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는 유·무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KT, SKT 등 100개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지정

< 2012~2013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 내용 >

대상 역무		**2012~2013년 제공 사업자**	2010~2011년 제공사업자와 비교
유선전화서비스 (시내전화, 공중전화, 도서통신)		KT	변동 없음
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	특수번호 전화서비스	**KT, SKT 등 총 39개 사**	**29개사 증가** (별정사업자 추가)
	선박무선전화	KT	변동 없음
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		**KT, SKT 등 총 100개 사**	**10개사 감소** 지역SO 12개 감소(102개→90개) VoIP사업자 2개 추가(삼성SDS, KCT)
총 제공사업자 수		**총 101개 사**	**총 111개 사**

o 향후 추진일정

- 2012. 3월말 :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 및 제공계획서 제출 통보
- 2012. 4월중 : 보편적역무 제공계획서 접수

나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16-066)

o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,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절차와 소유제한 관련 사항,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

다. ㈜KT의 Olleh Tv SkyLife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2-16-067)

o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위반한 ㈜KT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7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

① 조사결과

⑴ (중요내용 설명 입증미비) KT는 이용약관 상 OTS(Olleh Tv SkyLife)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- OTS 상품 전체 가입자 중 약 31만명(31%)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

⑵ (가입신청 제한) KT는 이용약관 상 OTS 단품(IPTV+위성방송)의 약정기간을 3년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

- OTS 단품 가입자 약 19만명에 대하여 3년 약정만으로 한정하여 판매

⑶ (KT의 위성설비 비용분담) KT는 SkyLife와 업무협약을 통해 “역무별 원가” 외에 “가입자당 평균 매출액(ARPU)” 등도 고려하여 OTS 수신설비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전용설비인 안테나 및 선로설비의 투자비용 중 일부를 KT가 부담

② 법 위반행위

⑴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3] V.2호 “다”목을 위반

⑵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신청을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제5호를 위반

⑶ 제휴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

③ 시정조치 등 주요내용

⑴ 중요내용 설명 입증미비

-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

-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확인 및 중요내용 설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

⑵ 가입신청 제한

-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상품을 3년 약정만으로 한정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

- 이용약관과 동일하게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

- 5억7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

⑶ KT의 위성설비 비용분담

-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하여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

7 보고사항

가.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o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(안)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

⑴ 단말기 수급환경 개선

- 신속한 단말제작을 위해 기존 이통사의 단말기·가입자 식별카드(USIM) 제작 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(6월)하고, 단말기에 대한 이통통신망 적합성 시험기간 명확화(2주) 추진(6월)

-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확대(4월, 재고단말→최신단말)하고,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, 유통망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(5월)

⑵ 재판매 제공서비스 확대

- 이통사의 부가서비스·국제로밍 등 제공서비스 범위 확대(7월)

- 재판매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이통사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추진(8월)

⑶ 무선랜(WiFi) 망 도매제공

- 이통사의 무선랜(WiFi) 망 도매제공을 추진(4월)하고, 이통3사가 공동구축한 무선랜(WiFi) 망에 대해서도 도매제공 검토

⑷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

- 재판매시장 진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전파사용료 면제 추진(4월, 기획재정부 협의)

- 아울러,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일회성 비용(전산개발 비용 등)에 대해서도 면제 추진(4월, 통신사업자연합회 협조)

②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

⑸ 가입자 식별카드(USIM) 이동확대

- 3G-LTE 단말간 USIM 이동을 시행(3월)하고, 스마트폰 USIM 이동시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 추진(5월)

- 아울러, LTE 주파수 할당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LTE 단말간 USIM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 추진

⑹ 번호이동 제도개선

- 모든 유형의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(4월~6월)

- 온라인 영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 개선(4월~6월)

⑺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

-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매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용어를 마련(4월~5월, 네이밍 사업)하고, 재판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(연중)

- 재판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약관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(2월 旣시행)하고,

-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통사와 재판매 사업자간 민원센터 직통전산시스템(Hot-Line)을 구축(6월)

③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

⑻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할인기준 완화

- 이동통신 재판매 도매대가를 재산정(4월)하고, 방통위 홈페이지에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공개(5월)

-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유인과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량 구매할인율 적용기준 완화(할인구간별 가입자 규모를 5만명씩 하향조정)

추가할인율	1%	2%	3%	4%	5%	6%
현 행	20만명~	40만명~	60만명~	80만명~	100만명~	120만명~
변경후	**15만명~**	**35만명~**	**55만명~**	**75만명~**	**95만명~**	**115만명~**

⑼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검토

- 재판매 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 등을 종합 고려, 도매규제 시한의 연장 또는 폐지여부 검토('13.상반기)

⑽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검토

- KT, LGU+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'도매제공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' 마련

- LTE 서비스는 사업자 투자유인,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의무서비스로 지정하지 않고, 추후 결정

나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 확대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중치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비율 의무부과 대상 방송사를 기존 "지상파방송사"에서 "지상파방송사(지역방송사 제외)·종편PP·연간 50%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문PP"로 확대(안 제57조제3항)

②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시 150% 가중치 적용 근거조항을 추가(안 제57조제7항)

③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'13. 1. 1부터 시행함(준비기간 5개월)(부칙)

o 향후일정

- '12. 4~6월 : 입법예고, 규개위, 법제처 심사
- '12. 5월 : 위원회 의결
- '12. 7월 : 차관회의·국무회의
- '12. 7. 18 : 공포 및 시행

다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방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신규편성 인정범위, 적용기준 및 비율,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중치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부과

⑴ 신규편성 인정범위(안 제4조제1항)

- PP의 경우 국내최초 작품을 신규편성으로 규정할 경우 가격 앙등 등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별로 즉, 지상파·종합유선·위성 등에서 최초 방영한 작품을 신규로 인정

⑵ 신규편성의 비율(안 제4조제5항, 안 제4조제4항)

- (적용기준) 신규편성 비율 계산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, 방송과 관련있는 방송매출액 기준을 적용

- (적용비율) 전문편성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PP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

< 전문편성 PP >

· PP별로 방송매출액이 238억원(투니버스)에서 3억원(애니플러스)까지 차이가 큰 시장현실을 고려하여 50억원 단위로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되,

· 공급가능한 제작물량 등 애니메이션 수급 물량에 대한 고려 및 매출액, 순이익 등 시장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의무 비율을 부과

<안 제4조제5항>

현 행	개정안					
<신 설>	구분	전문편성 PP				
		200억원 이상	150~200억원	100~150억원	50~100억원	50억원 미만
	비율(%)	1	0.8	0.6	0.3	제외

< 종합편성 PP >

· 종편 4사는 재산상황공표집이 발간되지 않아 연간 방송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, 개국 후 3개월 매출자료 및 올림픽 개최 등의 경영변수 등을 감안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고 최소 500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

<안 제4조제4항>

현 행	개정안				
<신 설>	구분	종합편성 PP			
		700억원 이상	700~600억원	600~500억원	500억원 미만
	비율(%)	1	0.7	0.5	0.3

②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중치 부여(안 제11조제2항)

- 기존 가중치 부여 사례 등을 고려,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150% 가중치 적용

③ 시행시기

-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비율 규제가 연간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과 '04년 지상파 방송사에 의무 부과 시, 10개월의 준비기간을 두었던 사례 등을 고려하여 '13. 1. 1부터 시행(준비기간 5개월)

o 향후일정

- '12. 4~5월 : 입안예고 및 내부 규제심사
- '12. 6월 : 규개위 심사 및 위원회 의결
- '12. 7. 18 : 공포 및 시행

라. 「방송통신 중소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」에 관한 사항

o 대·중소기업의 공생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 중소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라봉하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성장단계별 주요 사업내용

⑴ (창업기) 1인 창조기업 및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

- 아이디어 공모·개발·창업지원·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K-스타트업 프로그램 추진

· 아이디어 공모·선정(30개) → 서비스 개발 지원(멘토링/개발교육) →우수 과제 선정·시상(10개, 최대 1억원~2천만원)

-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KIF(총 6,447억원 규모)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, 모바일 광고 등 IT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

- 초기 중소기업(예시 : 창업 5년 이내)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초기기업 전용 R&D 지원('13년~)

⑵ (성장기) 유망 중소벤처 성장 촉진

-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&D 투자('12년 65억원)

-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(6개→7개)

※ 7개 분야 : 방송장비, EMC, 사물지능, 클라우드, 융합서비스, 연구시험망, 무선통신

⑶ (정체기/재도약기) 출구전략 및 재기지원

- 중소벤처기업의 중요한 출구전략인 M&A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중기청의 M&A 전용 투자펀드('12년 1조원) 활용

-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발굴·개선하고, 실패경험 공유를 통해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활용

⑷ (여건조성) 공생발전 환경 확산

- 콘텐츠 수익배분 기준 개선, 외산 대비 통신서비스 유지보수비용 차별 지급 개선

-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 종합지원허브 구축(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)

② 소요 예산(안) : '12년~'15년까지 약 1,871억원 지원

- 창업기 (270억원) : 인터넷 스타트업 발굴·지원 등
- 성장기 (1,479억원) :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등
- 재도약기 (10억원) : M&A 및 패자부활 관련 제도개선 등
- 여건조성(112억원) : 상생협의체 구성·운영 및 정보보호 지원 등

마. 「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」(대통령 훈령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o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를 유치함에 따라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, 준비기획단, 실무협의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을 조경식 국제협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ITU전권회의 준비위원회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(구성) 위원장(방통위 위원장), 부위원장(방통위 부위원장), 관련 부처 차관급, 부산시 부시장, 민간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

- (기능) 전권회의와 그와 관련된 행사의 계획, 추진사항, 범정부차원의 업무협의 등 전권회의 준비 및 개최 관련 사항의 심의·조정

②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(안 제7조, 제9조)

- (구성) 단장(방통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), 5개팀(방통위 및 관련부처 공무원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임직원, 단장이 채용하는 전문가 등)으로 구성

- (기능) 전권회의, ICT전시회 등 관련 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, ITU와의 국제협력 및 의제개발, 전권회의 현지사무국 운영, 전권회의 의장직 보좌 및 이사국 선거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

③ 실무협의회 (안 제10조)

- 준비기획단은 제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

- 실무협의회는 준비기획단장이 주재하고, 관련 부처 과장급 및 기획단장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

④ 민간자문위원회 (안 제11조)

- 전권회의 및 관련 부대행사 준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준비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

⑤ 대테러·안전 대책 (안 제12조)

- 준비위원회는 전권회의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, 행정안전부등 대테러·안전 유관기관에 테러대책기구의 설치·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

⑥ 공무원의 파견 등 (안 제14조, 제15조)

-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,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·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

-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된 공무원 및 임·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클 경우 원 소속기관에 승진임용 등을 요청할 수 있음

⑦ 수당 지급 등 (안 제17조)

-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등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나, 준비기획단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등 그 밖의 경비 지급은 가능함

⑧ 전권회의 관련 사업 지원 등 (안 제18조)

- 국가나 지자체는 개최지의 지속가능발전 및 ICT 산업성장의 견인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

⑨ 기념우표 등의 발행 (안 제19조)

-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권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음

o 향후 추진일정

- 대통령훈령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: 4월
- 대통령훈령안 위원회 의결 : 5월
- 법제처 법제심사 : 5 ~ 6월
-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 : 6월

바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배점조정 등

⑴「위치정보법 시행령」개정사항 (안 [별표 1] , [별표 2])

- 사업계획서 기재항목 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여부 평가 요소로 적합하지 않고, 중소 사업자가 작성하기 곤란한 “시장규모 분석” 등 삭제

- 이통사 등 일부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항목인 “타사업자와의 위치정보시스템 연동 계획” 등 삭제

⑵「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(고시)」개정사항

-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,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, 분량을 축소하며(200쪽 이내→150쪽 이내), 세부 심사기준 배점을 조정

② 기타 위치정보법 시행령상 미비사항 정비

⑴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자 신분확인 관련 (안 제28조)

- 긴급구조기관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조회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요청자와 대상자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

⑵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관련 (안 제32조 및 제37조의2)

-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, 위치정보 표준화 방법 및 절차는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을 따르도록 하고, 표준화의 추진 업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

o 향후 일정

- 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: ’12. 4월
- 위원회 의결 : ’12. 5월
- 법제처 심사 및 차관·국무회의 : ’12. 6월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함

6. 폐 회 (16:40)